

일본 수출규제/한일 관계 동향(2020.8.15.~2020.8.21)

1.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

-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절차 중단 요청(즉시항고)과 관련, 압류 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¹⁾
 - 2020년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8월 7일 제출한 즉시항고장과 관련, 사법보좌관처분 인가를 결정
 - 대구지방법원은 6월 1일 일본제철(구 신일철주금)의 한국 내 자산 압류와 관련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공시 송달하였으며, 8월 4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함. 이에 일본제철은 8월 7일 동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즉시항고함.
 - 한편 사법보좌관규칙에서는 “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고 동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”이라고 명시함에 따라, 이번 압류명령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임.
 - 이에 따라 향후 상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항고 담당 민사합의부에서 동 즉시항고를 심리한 뒤 압류명령결정의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이 결정될 예정
 - 다만 이번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은 절차상 이루어진 것으로, 향후 항고법원에서 판단할 압류명령결정의 집행 또는 취소 결정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- 한편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²⁾
 - NHK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도, 일본제철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기 때문에, 연내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이 매각, 현금화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

1) 「'강제징용' 일본제철 즉시항고에…韓 법원 "압류명령 문제 없다"」, 「이데일리」, (2020. 8. 16) 및 「日本製鉄の即時抗告認めず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8. 17) 및 「徴用工訴訟 日本製鉄の即時抗告認めず 韓国、判断は2審へ」, 「産経新聞」, (2020. 8. 18) 및 「「徴用工」日鉄の即時抗告認めず 韓国裁判所」, 「静岡新聞」, (2020. 8. 18)

2) 「「徴用」問題 日本製鉄の即時抗告に 韓国地裁支部「理由ない」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8. 17).

- 일본 정부는 “명백한 국제법 위반” 이라고 하면서, 한국 정부가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,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실시할 대항 조치를 검토중

2.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

□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,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³⁾

-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“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” 면서 “지금도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”고 강조

- 그러면서 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(개인의 배상청구권 인정)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논의해 왔다”는 점도 언급

- 국내 언론은 대통령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

□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⁴⁾

-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, 일본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“(한국 정부가) 협의에 응할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, 일본에게 양보를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”고 지적

- 일본 외무성 간부는 “대화가 중요하다면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”고도 지적

3) 「문대통령 "日과 협의 문 활짝...인권존중 노력으로 미래협력"」, 「연합뉴스」, (2020. 8. 15). 및 「「日本と向き合う準備」、韓国大統領、元徴用工巡り対話強調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8. 15). 및 「元徴用工問題で日本と対話姿勢 文大統領 「光復節」 演説」, 「朝日新聞」, (2020. 8. 16)

4) 「韓国光復節演説 文氏「徴用工」譲らず」, 「東京読売新聞」, (2020. 8. 16).